

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22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02. 24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개정이유

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확대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구체화하고자 함

☐ 주요골자

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
(안 제2조제3항)

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사회복지과 ☎940-4402
입 안 자	사회복지과장	김 태 회
	가정복지담당	김 선 욱
	담 당 자	최 연 경

신 · 구 문 대조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“기금”이라 함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.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파주시의 출연금 2.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<u><신 설></u>	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기금의 조성목표액은 <u>20억원으로 한다.</u>

2004. 2. 12 (목) 14:00

제3차 총무보사위원회

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총무보사위원회

전문위원 이용린

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4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04년 2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제안이유

-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확대를 위하여 노인 복지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구체화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.
(안 제2조제3항)

3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 확대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확대 조성하고자 동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20억원 규모로 구체화하여 기금 조성액을 늘려나가고자 하는 것임.
- 현행 조례상에는 기금목표액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지 않았으나 동 조례안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20억원 규모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-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1996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2억 7,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노인단체 육성과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나 최근 예금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노인복지기금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.
-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8.7%로 우리 사회가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노인 인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계층의 여가선용과 재취업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에 대한 경로효친 분위기를 유도하고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기금을 확대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.

- 또한,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현상을 감안할 때 노인의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으로 이에 따른 동 기금의 지속적인 확충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아울러,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요구됨.
- 참고적으로, 현재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23,336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9.8%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의 연차별 확보계획은 2004년 3억원, 2005년 3억원, 2006년 4억원으로 오는 2006년까지 총 10억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할 계획임.